

국무총리행정조정실

우 110-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-77 / 전화 (02) 720-2732 / 전송 723-1965

문서번호 국행삼 01022 - 88

시행일자 1994. 4. 8. (변경시까지)

수신 수신처 참조

참조

선결			지시	
접수	일자 시 간	:	결재	
번호			·	
처리과			공	
담당자			람	

제목 「의료인력 수급운영 및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따른 부처간 업무협조 지시」 변경
(국무총리 지시 제1994- 14 호)

1. 「의료인력 수급운영 및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따른 부처간 업무협조지시」
(국무총리지시 제34호, '81. 8. 6)와 관련됩니다.
2. 동 지시에 의거 의료관계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신.증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사회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는 협의대상중 학교법인(사립)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(국무총리 지시 제34호 "협의대상 2. 의료기관"중 "다"항)은 삭제하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국무총리 지시 제34호 ('81. 8. 6) 개정내용 1부. 끝.

국 무 총 리

수신처 : 교육부, 보건사회부

國務總理指示 改正內容

《 從 前 》

國務總理指示 제34호 (1981.8.6)

題目 : 의료인력수급운영 및 공공의료기관설립에 따른 부처간 업무 협조 지시

1. 현재 각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력수급 운영과 의료기관의 신.증설 및 지역변경 등으로 의료인력과 시설의 적정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

2. 의료인력 수급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공의료기관의 적정 분포 및 배치로 의료시혜의 균점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별첨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보건사회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< 協議對象 教育機關 및 醫療機關 >

1. 의료관계 교육기관 (신.증설 및 정원의 증.감축)

- 가.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 종별에 해당하는 각급교육기관
- 나. 의료기사법 제2조에 의한 기사종별 해당하는 각급 교육기관
- 다. 사설강습소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사설 강습소중 간호보조원의 양성시설

2. 의료기관(병원급 이상의 신.증설 및 지역변경)

- 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립하는 의료기관
- 나.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 하는 의료기관
- 다. ~~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~~ (국무총리지시 제1994- 14호: '94.4.)
- 라. 국고 1/2이상의 보조를 받아 설립하는 의료기관

《 改 正 》

○ 협의대상 "2. 의료기관"중 "다"항을 삭제함